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646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6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수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6조 (생략)	제1조 ~ 제6조 (제정안과 같음)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 장은 <u>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u>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 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 <u>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 의 이용편의를 위해</u> ----- ----- ----- -----.
제8조 ~ 제10조 (생략)	제8조 ~ 제10조 (제정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보다 완화된 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점검대상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점검 후에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청장에게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상호간 및 장애인등의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